

1 더 쉽고 빨라진 보이스피싱 이의신청

◇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계좌명의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이의절차 업무처리 절차표준화를 5월부터 시행

■ 추진배경

-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전시켜 계좌 지급정지를 유발한 후 금전요구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
 -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임에도, 수개월간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유지되어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
 -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업권 등과 함께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심사절차를 개선하고자 함

■ 주요내용

- 자료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5영업일 이내 이의제기 심사 완료
 - 지급정지 계좌주(명의인)이 소명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여 제출
 -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은 5영업일* 연장
 - * 재보완 요청시 3영업일 연장
- 특정 요건이 충족된 소액금액이 아닌 금액은 지급정지 해제
 - ①과거 지급정지 이력 無, ②입금액 제외한 입출금 내역이 생계와 관련된 경우,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심사 예정
 - 금융회사는 위 조건에 따라 이의제기 접수 시,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지급정지 해제

■ 협조사항

- 구·군 홈페이지 팝업창, 소식지(구보, 반상회보) 게재 등 홍보

자료제공 :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소비자보호팀 ☎ 051-606-1718

① 근본적인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본인의 계좌가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- 중고거래플랫폼 등에서 개인간 거래시 상대방과 대면하기 전에 계좌번호를 먼저 공유하기보다는 플랫폼 내 결제수단*을 활용하세요.

* 플랫폼 결제수단 활용시 본인 계좌가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장뭉기를 피할 수 있음

- 아울러,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매장 홈페이지에 계좌번호를 게재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여 주세요.

②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계좌에 입금되었을 때는 바로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이체하지 마세요.

- 만일 출처를 모르는 돈을 입금받은 후에 임의로 인출·이체할 경우,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오인받아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할 경우 바로 해당 계좌를 통한 입출금을 하지 말고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반환의사를 밝히시길 바랍니다.

③ 통장뭉기 등으로 이미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황이라면 금융회사에 연락하고, 소명자료를 준비 후 신속하게 이의제기를 신청하세요.

- 금융회사가 요청한 소명자료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업무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,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세요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